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31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김선교 · 서천호 · 김성원
김위상 · 김상훈 · 최보운
강대식 · 이현승 · 박덕흠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상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할 것
2. 감사원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구하여 그 의견에 따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3.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배상책임) ① (생략)	제2조(배상책임) ① (헌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할 것
<신설>	2. 감사원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구하여 그 의견에 따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신설>	3.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③ (생 략)	<u>것</u> ③ (현행과 같음)
---------	------------------------